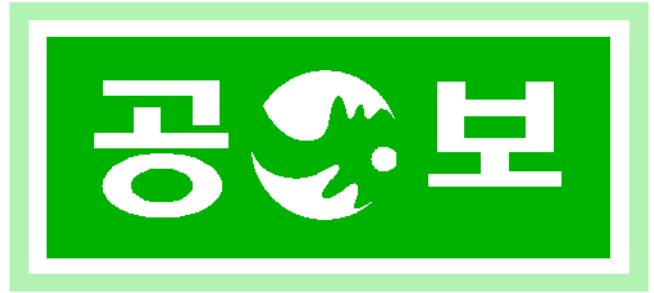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기 관 의 장



제 696 호 2011. 6. 22(수)

공 고

-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443호[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444호[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문화홍보과(☎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 44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식지 제호 및 발행주기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 소식지 제호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2조 1항)

- '행복일번지 울산 북구' → '무룡산'

나. 발행주기를 월별로 변경함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3조)

- 분기 1회 → 매월 또는 분기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문화홍보과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9-7207, FAX 219-756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구 문화홍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1 - 444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식지 발행주기 변경에 따라 관련 조분 개정

2. 주요내용

가. 소식지 발행주기를 월별로 변경함에 따른 조분 개정(안 제2조 제1항)

- 분기 마지막 달 25일 → 내월 말일 또는 분기 마지막달 말일

나. 주민들에게 구정소식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알림사항, 문화 행사 등을 신청자에 한해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공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안 제5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취조:문화홍보과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9-7207, FAX 219-75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조례 시행규칙_인부개정규칙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구 문화홍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개합니다.